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제3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추진
- ☐ 예산규모 : 약 60억원
- ☐ 사업기간 : 협약일 ~ '25. 11. 15.(금)까지(완료보고서 제출 및 점검완료)
- ☐ 관리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 + 기업분담금)

**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 분야 및 사용 가능 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바우처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신청 제외 대상

- ◆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휴·폐업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간 : '25. 5. 2.(금) ~ '25. 5. 16.(금)

- (접수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인 5월 16일(금)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수도권 외 14개 지자체)의 신청서 제출 시간을 구분하여 제출
 - * 신청서 제출(5.16,금) : 수도권 기업(09:00~14:00) / 비수도권 기업(14:00~18:00)
 -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 본 사업수행 사업장 기준을 신청
-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별첨4)
-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 신청 필요

신청 전 유의사항

- ◆ 신청 전,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내 [메뉴판]-[서비스검색]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 확인 및 **수행기관 확인 후 희망 순위 작성 (사업별 신청서식 참조)**
- ◆ 사업 신청 및 참여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 보조금 환수 및 정부 사업제재
- ◆ **선정된 수요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 수강, 협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하며, 사업 완료 이후, 정산하지 않으면 환수**
 - * 2자협약(중진공-수요기업) : 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
 - 3자계약(운영기관-수행기관-수요기업) : 선정 후 50일 이내 체결
- ◆ 신청 및 최종선정 기업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
- ◆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에 명시된 항목만 바우처 사용 가능
- ◆ 타 정부지원사업(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등) 수행한 과업 내용이 중복일 경우 신청 불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 일반 바우처

- (지원대상)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이하 제조 소기업 중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단, 융복합컨설팅 신청 시 협업승인 후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가능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융복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가업승계 등	15
기술 지원	AX·DX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30
	신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통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20
	IP기반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15
	제품시험인증 연구장비활용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물 제작	-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브로셔, 카탈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20
	광고 지원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광고(온라인 광고, 방송, 신문, 옥외 광고, 교통매체 등)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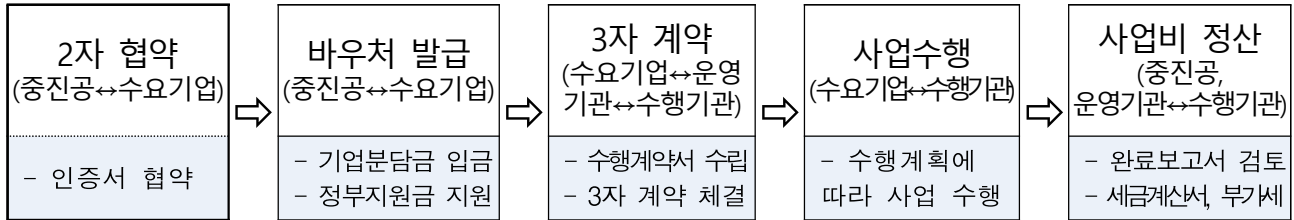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45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45%	55%

- (바우처 사용기간) '25년 11월 15일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사용기간 엄수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¹⁾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⑧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온라인 작성
⑨		①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②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③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④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⑤,⑥,⑦,⑧,⑨,⑩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공통우대 가점 사항 ²⁾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①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②협업승인 기업, ③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④재기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⑤중소기업 밀집지역 '주의·심각' 단계 입주기업, ⑥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석유정제,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금속 제조업), ⑦지역 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⑧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⑨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 ⑩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소재 기업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 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년, '22년, '23년) 제출
- (⑧) 각 지식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식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⑨)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우대가점 연번⑨(①~④)는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예산에 따라 최초 신청 금액이 조정·축소 될 수 있음

3. 문 의 처

구분	전화
일반 바우처	1357 055-751-9847, 9851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 [별첨4]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

별첨 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신청 서식

【서식1】 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계획서

1. 회사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2. 대표자 경력

대 표 자	학 력	졸업연월	학 교	학과(전공,계열)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	기 간	근무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무)		
동종업종 종사기간		년 개월	포상 및 상훈				

3. 주요 거래처

구분	업 체 명 (연락처)	거래품목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비중 (%)	연간 거래액 (백만원)	거래기간	대금회수 기간
매 출 처	국내					개월	일
						개월	일
						개월	일
	해외					개월	일
						개월	일
						개월	일

4. 주주현황[주식 보유 순으로 기재]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 장 상 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등)

5-1.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이력 및 사업화 진행현황(참여이력 보유 기업)

참여연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재참여 기업만 작성	매출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천원단위로 기재
참여 서비스 (프로그램)		고용창출 효과 (단위 : 명)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수 기재
주요 성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추진한 협약과제 이행 결과와 이를 통한 경영 개선 이행수준, 개선 성과, 추가적인 사업화 등 주요성과 및 환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사업 참여이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작성(필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기술지원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6-2. 희망 수행기관

혁신바우처플랫폼 홈페이지 내 [메뉴판]-[서비스검색]에서 신청기업이 작성한 “6-1.수행 과제”가 가능한 수행기관들을 확인 후 희망 순위를 필수로 작성. 미등록 기관은 진행불가

예시)

컨설팅	1순위	OO컨설팅	플랫폼 내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2순위	OX연구원	플랫폼 내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	-----	-------	---------------	--	-----	-------	---------------	--

컨설팅	1순위	컨설팅 프로그램 수행기관 1순위	플랫폼 내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2순위	컨설팅 프로그램 수행기관 2순위	플랫폼 내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기술 지원	1순위	기술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 1순위	플랫폼 내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2순위	기술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 2순위	플랫폼 내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마케팅	1순위	마케팅 프로그램 수행기관 1순위	플랫폼 내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2순위	마케팅 프로그램 수행기관 2순위	플랫폼 내 등록여부	☐ 등록 ☐ 미등록

6-3. 과제개요

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

6-4.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6-5.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6-6.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 인원 기준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매출증대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기준
	매출 증가액	(천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증가액(천원)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7. 사업비(바우처 금액) 조성 내역

구 분	신 청 분 야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합계
정부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3억원 이하(85%), 3억원~10억원(75%), 10억원~50억원(65%), 50억원~120억원(45%)

*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 50,000천원

8. 추진일정[빛금색칠 혹은 Bar 표시]

신청분야	'25년								
	3	4	5	6	7	8	9	10	11
컨설팅	해당없음								
기술지원									
마케팅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과제 내용	참여년월

10.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및 전공	예시)대졸, 경영학	생년월일		이메일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서식2】 융복합 컨설팅 협업계획서(‘컨설팅’-경영기술전략 내 융복합 신청희망 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융복합컨설팅) 협업계획서

☐ 협업체 기본정보[신청시, 주관기업이 전담작성]

구 분		기 업 명	대표자	설립연도	매출액(천원)**	생산품
협업체 구성	주관기업*					
	참여기업***					

* 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진행(모든 평가는 주관 기업 대상 실시)

** 매출액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년, '22년, '23년) 제출

*** 수행기관과 협업체 구성은 제한

☐ 협업 추진체계

기 업 명	역할분담	협업비중(%)	융합 공동기술개발(제품) 설명	
	예)생산		제품사진	상세설명
	예)마케팅			
	예)디자인			

☐ 공동협력방안

구 분	협 력 방 안				
제품개발 및 개선					
생산					
사업화					
협력모델	비즈니스모델	☐ B to B		☐ B to C	☐ B to G
	판로대상	국내			
		국외			

* 사용계획 내 인증심사비는 편성 불가하며, 협업계획에 대한 공증비(50만원 이내) 발생

별첨 2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3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

별첨 3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및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21년 ~ '23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1년.1.1 이전 설립 기업	- '21년, '22년, '23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21년 설립	- '22, '23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2년 설립	- '23년 매출액
'23.1월~'23.11월 설립	- '23년 매출액을 '23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3.12월 설립	- '23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4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24년 표준재무제표 발급 전)
'25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

☞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21.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1년, '22년, '23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23.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3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3.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3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별첨 4

중진공 소재지 및 관할구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전화번호
서울 인천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5층	02-2106-7454
	서울동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한국벤처투자빌딩 101~102호	02-2023-4321
	서울서부지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가산동) 가산W센터 413호	02-2106-7414 02-2106-7412
	서울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한국벤처투자빌딩 101~102호	02-2023-4335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7-50), 갯벌타워 14층	032-837-7031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	032-560-2363
경기 강원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경제과학진흥원 11층	031-260-4974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203호	031-760-9004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고잔동), 1층(신용보증기금 빌딩)	031-783-0623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봉담원희캐슬 4층 431-434호	031-899-9104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23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중앙로2가)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43
대전 충청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15층	033-649-9377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25 042-281-3726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나성동)	044-860-8307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 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87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4층	042-230-6832 042-230-6834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연수동) 2층	043-841-3613
광주 전라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4(치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66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3가)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43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나운동) 한화생명빌딩 4층	063-460-9831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4층	061-280-8043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장천동)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57
대구 경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산격동)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053-606-8433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경상북도경제진흥원 5층	054-440-5912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지곡동) 포항테크노파크 112호	054-288-7343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삼풍동300)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053-603-3321
부산 경남	부산지역본부 부산 진구 중앙대로639, 23층(엠디엔타워)	051-630-7425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재송동) 벡산-센텀클래스원 201~202호	051-745-5923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삼산동 1479-5) W-Center 14층	052-703-1123 052-703-1139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55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055-310-6626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충무공동) 이노휴먼씨티 3층	055-751-2903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층	064-754-5157

□ 관할구역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서울	서울	중구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울동부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서울서부	금천구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남부	서초구 , 강남구	
인천	인천	연수구 ,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	서구 ,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	경기	수원시 ,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	성남시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경기서부	안산시 , 시흥시, 광명시	화성시(남양읍, 마도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경기남부	화성시 ,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남양읍, 마도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경기북부	고양시 ,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김포시, 부천시
대전 세종	대전	대전시 ,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
	세종	세종시 ,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서천군
충남	충남	천안시 ,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	충북	청주시 ,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충북북부	충주시 ,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음성군
강원	강원	춘천시 ,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정선군, 평창군
	강원영동	강릉시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전북	전북	전주시 ,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북서부	군산시 ,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 전남	광주	광주시 ,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전남	무안군 ,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나주시, 영광군, 장흥군, 함평군
	전남동부	순천시 ,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장흥군
	제주	제주시 , 서귀포시	
대구· 경북	대구	대구시	군위군, 고령군
	경북	구미시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군위군, 고령군
	경북동부	포항시 ,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경북남부	경산시 , 영천시, 청도군	
울산	울산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부산	부산	부산진구 , 강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	해운대구 ,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경남	경남	창원시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	김해시 , 밀양시, 양산시	양산시
	경남서부	진주시 ,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 구역